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6의2] <개정 2021. 12. 31.>

분사기의 검사기준(제50조제1항관련)

1. 성능개조 여부 검사기준

구분	종목	검사항목	검사합격기준
구조형식	분사기	1.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 검사	·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·손괴·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
		2. 손잡이 및 몸통원형 유지상태 검사	·손잡이 및 몸통이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
		3.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검사	·제조번호의 타각·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

2.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 안전검사기준

가. 분말분사기

구분	종목	검사항목	검사합격기준
구조형식	분말분사기	1. 설계도면 일치 여부	·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
		2. 재질검사	·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 이상 사용하여도 팽창·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·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·균열이 안될 것
		3. 발사장치	·격발식방아쇠는 안되며 지레목식 방아쇠장치일 것 ·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·방아쇠 바늘은 연속 5회 이상 사용하여도 마모 또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
		4. 안전장치	·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
		5. 제조번호 등 표시	·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·제품명칭(영문약자2자)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

		6. 분사거리	·3m~7m 이내일 것
		6. 분사거리	·7m 이내일 것 (막대형은 10m 이내일 것)
		7. 압력사용제한	·CO ₂ 가스는 17g 이하를 사용할 것
		8. 분사기의 전체 길이	·40cm 이하일 것 (막대형은 60cm 이하일 것)
		9. 분사기의 구경	·분사기의 구경은 4mm 이내일 것
		9. 분사구의 지름	·분사구의 지름은 4mm 이내일 것
		10. 약제통	·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
안 전 도 내압시험	약 제 통	약제통의 내압시험	·이은자리가 없는 재질로 하여 20kg/cm ²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
약제성분 시 험	약 제	약제의 성분검사	·약제별 성분검사를 하며, 독물·극물·취루가스 등 법령에 의하여 제조·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. 다만, 치안목적용 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액체분사기

구 분	종 목	검 사 항 목	검 사 합 격 기 준
구조형식	액체분사기	1. 설계도면 일치 여부	·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
		2. 재질검사	·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·균열이 안될 것
		3. 발사장치	·누르는 방식이어야 하고, 노즐을 이용한 액체분무식일 것
		3. 발사장치	·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
		4. 제조번호 등 표시	·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·제품명칭(영문약자 2자)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
		5. 분사거리	·2m~5m 이내일 것(막대형은 5m~10m 이내일 것)
		5. 분사거리	·7m 이내일 것(막대형은 10m 이내일 것)
		6. 압력사용제한	·액체의 분사형태는 내장된 가스압력

			에 의하여야 하고 가스압력은 8kg/cm ² 이하일 것(막대형은 CO ₂ 가스 17g 이하일 것)
		6. 압력사용제한	·액체의 분사형태는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야 하고 가스압력은 8kg/cm ² 이하일 것(막대형은 CO ₂ 가스 17g 이하일 것)
		7. 분사기의 전체 길이	·20cm 이하일 것(막대형은 60cm 이하일 것)
		8. 분사기의 모양	·원통형일 것
		8. 분사구의 직경	·분사구의 직경은 4mm 이내일 것
		9. 약제통	·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
안 전 도 내압시험	약 제 통	약제통의 내압시험	·액체약제통은 15kg/cm ² 의 압력에 균열·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
안 전 도 내압시험	약 제 통	약제통의 내압시험	·액체약제통은 15kg/cm ² (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kg/cm ²)의 압력에 균열·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
약제성분 시 험	약 제	약제의 성분검사	·액체분사기의 약제는 불연성액체를 사용할 것 ·독물·극물·취루가스 등 법령에 의하여 제조·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. 다만, 치안목적용 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